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						
<p>제40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	<p>제40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매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A, C, Ce, W, I, Ae 클래스 수익증권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Cp, Cp-E, Cp2, Cp2-F, Cp2-E 클래스 수익증권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>없음 (환매수수료 면제는 2021년 4월 30일 환매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)</u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	환매수수료	<u>A, C, Ce, W, I, Ae 클래스 수익증권</u>	<u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	<u>Cp, Cp-E, Cp2, Cp2-F, Cp2-E 클래스 수익증권</u>	<u>없음 (환매수수료 면제는 2021년 4월 30일 환매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)</u>
종류	환매수수료						
<u>A, C, Ce, W, I, Ae 클래스 수익증권</u>	<u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						
<u>Cp, Cp-E, Cp2, Cp2-F, Cp2-E 클래스 수익증권</u>	<u>없음 (환매수수료 면제는 2021년 4월 30일 환매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)</u>						
<p>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<u>제42조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<u>제40조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					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					